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7호 2021. 10. 22.(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1-20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1-206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1-21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 하동군 고시 제2021-213호 하동군계획시설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2-5호선)]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6
- 하동군 고시 제2021-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1-01-01호)····· 1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467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조례안 입법예고····· 19
- 하동군 공고 제2021-1495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 하동군 공고 제2021-1514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21-1528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45
- 하동군 공고 제2021-1529호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51
- 하동군 공고 제2021-1536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21-1547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5
- 하동군 공고 제2021-1548호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0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464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1-9호)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21-1489호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8
- 하동군 공고 제2021-1533호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82
- 하동군 공고 제2021-1546호 방치선박 등 제거 재공고····· 83
- 하동군 공고 제2021-1559호 섬진강사랑의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수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94

회									
람									

하동군 고시 제2021 - 204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59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53-88 외 12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9.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4-1, 24-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59	20210930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를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35-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태봉길 24-30	20210930		20100517	마을의 뒤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66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55	20210930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99-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송림길 51-24	20210930		20070618	관곡리에 위치한 송림 마을명을 관곡송림길이라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14-11	20210930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594-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89	20210930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312-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220	20210930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44-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만지길 22-5	20210930		20080402	만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411-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16-6	20210930		20070618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산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1820	20210930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53-88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53-64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32-186	20090302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2-112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27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6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1길 44-24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93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87	2009071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8-1	20080402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209	20090302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39-3	20090302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33-18	20090302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1-206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5.

하 동 군 수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하동군 관할수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가.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기상청 발표 기준)

나. 레이더 등 야간 항해 장비를 설치한 낙시어선

- 22:00 ~ 익일 03:00

※ 단,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낙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업구역의 제한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나. 무인도서 중 갯바위(간출암) 반경 50m이내 해역

다. 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낙시어선은 하동군 선착장을 기점으로 3해리 이상

4. 낙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 출항금지

나. 안전운항 위험시 : 출항제한

다. 구명조끼 착용 :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갯바위 하선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5.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

-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6.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가. 승객 준수사항

-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2)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 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양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바)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사)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 5)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및 취사를 자제한다.
- 6)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

- 1) 낚시어선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

- 추어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 6)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수거식 간이 변기 비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 7) 낚시어선의 승선 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낚시어선 신고확인증을 [별표2]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8)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낚시어선업자는 [별표3]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출항 전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12)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법령(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를 작동시켜야 하며, 사고발생시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14)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갯바위 등)에 하선하는 때에는 출항시 또는 승

객 하선 후에 승객별 하선지점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승객을 안내 이후 승객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16) 낚시어선업자는 갯바위 하선 승객을 철수시킬 때에는 일일 2회 철수승객 명단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단, 통보시기는 13:00, 22:00로 하며 입항시간 기준 각 통보시기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속력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1) 협수로 등을 통항할 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2) 가두리양식장 주변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나. 제7-가항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운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협조요청

가. 군수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시간, 영업구역,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속력제한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군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동군 고시(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및 관련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하동군 고시 제2021-57호)는 폐지한다.
-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별 표 1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설 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 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글씨 : 검은색

2)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
- 2.
- .

승객준수사항

승선정원 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승객,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낙시어선의 승객은 낙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낙시어선업자(선원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2) 낙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낙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낙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 채취금지체장(체중)을 준수하고 포획 · 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7) 승객은 낙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8)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9) 낙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별표3]

낙시어선 출항전 승선한 승객에 대한 안내문(안)

1. 안전사고 예방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input type="checkbox"/>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고체식 및 팽창식 사용방법 설명
구명뗏목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
<input type="checkbox"/> 비상신호 ○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input type="checkbox"/>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 집합장소 : 갑판 ○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input type="checkbox"/>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 통영해양경찰서(상황실) : 055)647-2742(122접수) ○ 삼천포어선안전조업본부(구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 : 055)833-6413		
<input type="checkbox"/> 유사시 대처요령 ○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2. 주요 낙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11~8.31	전국	-
갈 치	7.1~7.31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전국	18cm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1~1.31	전국	15cm이하
넙치	-	-	21cm이하
농어	-	-	30cm이하
볼락	-	-	15cm이하
대구	1.1~11.31	-	30cm이하
참돔	-	-	24cm이하
붕장어	-	-	35cm이하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4. 기타 사항

* 선박내 주류 반입금지
 * 승선자 명부 작성시 비상연락처 기입(직계가족 등 휴대전화)
 * 안내방법 : 선내 게시, 음성안내, 안내지 배부 등(카톡, 문자 메시지)

☞ 시행일 : 2019. 7. 1. 부터

안내 방송용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홍길동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차례대로 승·하선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 및 주류반입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 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통영해양경찰서(상황실) : 055)647-2742 (122접수), 통영어선안전조업본부 : 055)645-3141이며,
-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채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채장·체중 및 금어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내문 참조
-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선박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 * 승선자 명부 작성시 비상연락처 기입(직계가족 등 휴대전화)

하동군 고시 제2021 - 210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187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4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4-5 외 8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575-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87	20211015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545-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103	20211015		20080402	구청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857-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76	202110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1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590-14	202110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산20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397-105	20211015		2014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80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455	20211015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23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122	20211015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97-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45	20211015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6-11	202110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11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398-14	20211015		20090302	매자와 신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자연마을이름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6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내길 8	20211015		20070618	송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390-1, 97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화로 778-36	20211015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39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50-103	20211015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54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부계1길 10-6	20211015		20070618	오리가 많이 살았던 골짜기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4-5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85-70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85-71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85-69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안길 9-73	2013052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안길 9-134	2013052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903-62	20090302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3-51	200706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208	20090302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1-213호

하동군계획시설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동군 읍내리 160-1번지 일원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 10. 18.

하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60-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167.9m, B=1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인가일로부터 3개월
 - 준 공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8.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055-880-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 치			지 적(m ²)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60-2	답	1,965	34	1식	문수*
2	하동읍 읍내리	160-1	답	2,161	1,079	1식	박미* 외 2인
3	하동읍 읍내리	140-5	구	136	39	1식	농림축산식품부
4	하동읍 읍내리	156-4	도	137	41	1식	농림축산식품부

하동군 고시 제2021-214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21-01-1호

주 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15-17		
성명(법인명)	(주)원앤원 건설		
생년월일 (법인번호)	176011-0015071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6-3		
목적및면적	섬진강 두곡1지구 재해복구사업(가설 사무실) 1,265(㎡)		
최초허가일	2021년 10월 12일		
점용기간	2021. 10. 12. ~ 2022. 09. 29. (1년)		
허가조건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1-1467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0월 0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880-2524, FAX 880-2598, e-mail bjj5553@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하동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하동군의회 의원
 - 2. 군 관계공무원
 -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자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1495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사항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요금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전부 규정
 -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 정비
 - 다. 민원인의 권익보호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
 - 라. 상위법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 도입(안 제8조)
 - 상위법령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을 도입하여 조례 정의 개정
 - 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 변경 조례 수정(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하동군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 055-880-2973, FAX 055-880-2019, e-mail : kjhoo92@korea.kr)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끝.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

제 출 자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 자 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사항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3건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요금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전부 규정
-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3건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 정비
- 다. 민원인의 권익보호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1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
- 라. 상위법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 도입(안 제8조) : 1건
 - 상위법령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을 도입하여 조례 정의 개정
- 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 변경 조례 수정(안 제1조, 안 제9조) : 2건
 - ⇒ 총 9건의 조례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조례 소관 부서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마. 참고자료 : 개정 대상 조례 목록 현황 붙임
- 바.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 . ~ . . (20일 이상)
 -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한다)”을 “문화체육과장(이하 “과장”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제2조(「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3조(「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장애인복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 공증한다”를 “체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하동군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9조(「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전단 중 “산단조성과장”을 “산단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80%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80%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80%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인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50%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0%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6. ~ 8. (생략)</p>	<p>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13. ~ 15.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5. (생략)</p> <p>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7. ~ 17. (생략)</p> <p>④ (생략)</p>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p> <p>8. ~ 18. (현행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9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 ----- ----- ----- -----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p> <p>②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단서 신설></p> <p>1. ~ 7. (생 략)</p>	<p>제9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체결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p>1. ~ 7. (현행과 같음)</p>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 략)</p> <p>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p>	<p>제12조(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p> <p>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p> <p>3. ~ 1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p> <p>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p> <p>3. ~ 14. (현행과 같음)</p>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이 회계의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분임경리관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u>산단조성과장이</u>,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5.7.1., 2018.8.3.></p> <p>2. (생략)</p>	<p>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 -----.</p> <p>1 ----- -- <u>산단개발과장</u> ----- -----.</p> <p>2. (현행과 같음)</p>

개정 대상 조례 목록 현황(총 9건)

연 번	개정사유	제 명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숙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3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6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7	민원인의 권익보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8	포괄적 정의 내용 도입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9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정비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 련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역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역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역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摺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진정성립 -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므로 공증의 의무 및 필요성이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21-1514 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 제안 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예산지원 명문화
3. 주요 내용 :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7, FAX 880-2109, e-mail sh070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 임 1.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하동군 공고 제2021-1528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제3조)
 - 나. 의견제출 제외대상(안 제4조)
 -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안 제5조 ~ 제6조)
 - 라.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안 제7조 ~ 제8조)
 - 마.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 ~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하동군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 055-880-2974, FAX 055-880-2019, e-mail : h9901071@korea.kr)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

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제7조제1항)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검토일자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

하동군 공고 제2021-1529호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가. 행정안전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입증책임전환 근거 마련
 - 나.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나.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 심사 절차 (안 제3조 ~ 제5조)
 - 다.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안 제6조)
 - 라. 재심사의 요청 및 의견 청취 등 (안 제7조 ~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하동군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 055-880-2974, FAX 055-880-2019, e-mail : h9901071@korea.kr)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경제·민간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관리 번호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 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초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추진 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관리 번호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제4조 관련)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제4조 관련)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2. 구 분							
	신 설		강 화		내 용 심 사		존 속 기 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분석방법	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6.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7-1. 규제존속 기한	20** **. **, (사유)							
7-2. 규제존속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제4조 관련)

1. 규 제 명 칭	
2. 규 제 내 용	
3. 관 련 부 서 / 민 간 단 체 의 의 견	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 체 심 사 의 의 견 (규 제 범 위, 방 법 등)	
5. 첨 부 자 료	기 타 심 사 에 필 요 한 자 료 (표 준 조 례 안, 관 련 공 문 등)

하동군 공고 제 2021-1536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무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기준 마련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 무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령 개정(안 제5조제3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3, FAX 880-2569, e-mail voglia1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 임 1.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3항 관련)

종 류	재활용 가능품목(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규격봉투에 담는 품목)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등 ○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 종이컵, 우유팩 ○ 종이상자류(과자, 과일상자 등) ※ 배출요령 : 종이류에 붙은 스프링, 클립,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종이컵, 우유팩은 안을 깨끗이 씻어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된 종이류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등) ○ 팩스용지, 사진 ○ 화장실 사용후지 ○ 오물이 섞여있는 종이 (페인트 등)
공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류 ※ 배출요령 : 담배꽂초 등 물질 제거후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 거울, 각종 도자기류, 내열식류 ○ 형광등, 전구 등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용캔, 식품용캔, 분유, 통조림캔 등 ○ 에어졸, 부탄가스용 캔 ※ 배출요령 : 담배꽂초 등 이물질 제거 후배출, 에어졸, 부탄가스용 캔은 구멍을 뚫어 배출 ○ 공구, 철사, 못, 철판등쇠붙이 ○ 알루미늄, 스텐, 구리 등 ※ 배출요령 : 고철에 붙어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 포장통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류(P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주스, 콜라, 생수병 등) · 간장병, 식용유병 등 ○ 각종식. 음료용 용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쿠르트, 삼푸, 세제용기 ○ 기타 용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자 (맥주, 콜라, 사이다, 소주) · 쓰레기통, 쓰레받기, 스티로폼 ※ 배출요령(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은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이물질을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페트병류 중 무색페트병은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전화기, 소켓, 대야, 냄비손잡이·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재떨이 ○ PVC류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프, 빗물흡통 등 · 복합재질 용기 ·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된 제품·옷걸이 등 ○ 기타 - 가전제품케이스, 정화조 등
페스치로 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상자류 및 과일상자 등 포장재류 ※ 배출요령 : 이물질 제거 하고 일정량씩 묶어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컵라면 용기 등 1회용품 용기
기 타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품류 : 순모양복, 내의 등 ※ 배출요령 : 단추, 지프 등 이물질 제거 하고 물에 젖지 않게 배출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전지 등 ※ 배출요령 : 품목별로 읍.면 사무소 폐건 전지 수거함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등 ○ 입을 수 없는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u> <u>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u> <u>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u> <u>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u> <u>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u> <u>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u>

하동군 공고 제2021-1547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2. 제안 이유 :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소통의 장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다양한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4, FAX 880-2159, yeseul157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시설을”을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하동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u>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p> <p><u>②</u>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u> <u>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 방안 모색</u> <u>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u> <u>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u> <p><u>③</u>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u>④</u>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u>청년시설의 설치·운영</u>) 군수는 <u>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5조(<u>청년센터 설치·운영 등</u>) ① -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하동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p> <p><u>②</u>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u>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1-1548호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노인 및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 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안 제4, 5조)
 - 라. 경로당의 정산 등(안 제6조)
 - 마. 보조금의 지원제한 및 반환(안 제7, 8조)
 - 바. 사업의 감독(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하동군수(주민행복과 전화 055-880-2334, FAX 055-880-2349, e-mail ae7472@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10명 이상 및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4.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시설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4. 신축·증축·개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비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

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

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보수 및 기능보강

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마을회, 노인회)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1464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 1-7호,1-9호)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 1-7호,1-9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업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 1-7호, 1-9호)개설공사
- 다. 위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27-8번지 일원
- 라.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452m, B=7.5m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2. 보상대상 : 토지(2필지, 184㎡)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1.10.6. ~ 2021.10.21.(15일간)

4. 이의신청 및 열람기간 : 2021.10.6. ~ 2021.10.21.(15일간)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나. 협의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 다.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하동도시계획도로(소로 1-7, 1-9호)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구분	주소	지번	지목	편입분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하동읍 읍내리	127-8	답	138㎡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	이동*
2	하동읍 읍내리	127-9	답	46㎡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	진익*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하동도시계획도로 (소로 1-7, 1-9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 추천업체 :

○ 추 천 일 : 2021. .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확인	전화 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1-7, 1-9호선) 개설공사			
② 위 치				
③ 사 업 시 행 자	하동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1-1489호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10. 8. ~ 10. 25. (17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64,6)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반송현황

순번	분기	납부자	차량번호	송달주소	시군구	세부주소	반송구분
1	20212	(주)와*지개발	82버64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40길 *	반송함투여
2	20212	박*철	84저85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74,	반송함투여
3	20212	신*현	97버12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시목길*4	반송함투여
4	20212	이*우	경남81무4*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9	수취인부재
5	20212	강*연	25더63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운암길*	수취인부재
6	20212	(주)금*건설	96두86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0	수취인불명
7	20212	하*철	29주96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복로*	수취인불명
8	20212	이*상	91더4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	수취인불명
9	20212	D**KINMEHMET	50버7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0	수취인불명
10	20212	이*숙	98수87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3	수취인불명
11	20212	하**우레저단지개발주식회사	96구10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	수취인불명
12	20212	김*철	05머7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수취인불명
13	20212	이*철	84구9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14	20212	세**보통신(주)	경남81무2*8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15	20212	김*환(삼*페인트)	경남81무6*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16	20212	권*상	09나3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17	20212	강*은	66가97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15	수취인불명
18	20212	손*순	97거54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동곡길*8	수취인불명
19	20212	하*진	97나14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의양길*	수취인불명
20	20212	(주)풍*산업	경남71라2*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0	수취인불명
21	20212	동**와산업(주)	경남7도44*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0,	수취인불명
22	20212	김*상	47거8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촌길*	수취인불명
23	20212	조*도	52저86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	수취인불명
24	20212	권*상	79더77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25	20212	강*호	95고2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8~12	수취인불명
26	20212	김*자	96무71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수취인불명
27	20212	강*엽	부산1나3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15	수취인불명
28	20212	이*영	86누68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28~21	수취인불명
29	20212	(주)신**공업지점	86조87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수취인불명
30	20212	양*호	46보3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수취인불명
31	20212	황*곤	88거7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	수취인불명
32	20212	이*철	97나25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16	수취인불명
33	20212	이*상	96버94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	수취인불명
34	20212	이*상	97거26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	수취인불명
35	20212	강*조	경남7모3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수취인불명
36	20212	김*훈	37머24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	수취인불명
37	20212	(주)청**지니어링	49부8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1	수취인불명
38	20212	김*엽	96주33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수취인불명
39	20212	이*진	경남81무4*7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수취인불명
40	20212	권*현	66수89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	수취인불명
41	20212	정*수	37보708*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5	수취인불명
42	20212	박*심,천*호	54구51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3	수취인불명
43	20212	정*수	84서92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5	수취인불명
44	20212	우*통상(주)	경남99바9*9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1~0	수취인불명
45	20212	우*통상(주)	경남99바9*9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공길*1	수취인불명
46	20212	노*원	부산30너9*7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수취인불명
47	20212	이*상	10도88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수취인불명
48	20212	이*상	95가68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수취인불명
49	20212	문*순	96무70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법왕*	수취인불명
50	20212	반*안	경남47나2*3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수취인불명
51	20212	노*현	72나35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6	수취인불명
52	20212	노*현	84서68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6	수취인불명
53	20212	K**ANCHIKAN	29누2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0	수취인불명
54	20212	이*우	경남7도31*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수취인불명
55	20212	강*수	부산8구39*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수취인불명
56	20212	황*이	경남70나1*4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수취인불명
57	20212	김*용	84다70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수취인불명
58	20212	홍*표	95서44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하실*~42	수취인불명
59	20212	이*엠(주)하동지점	96무70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12	수취인불명
60	20212	서*한	경남7느13*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춘리*	이사감
61	20212	T**NHTYTUAN	23버41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이사감
62	20212	(주)하*고속관광	79버7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이사감
63	20212	합**사진교기업농업회사	경남81무1*7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이사감
64	20212	조*곤	81가74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	이사감
65	20212	하**산영농조합	경남81무1*6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사감
66	20212	박*선	94우75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길*	이사감

67	20212	김*태	49보14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이사감
68	20212	김*규	전남89다1*4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2-10	이사감
69	20212	이*이	45보35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이사감
70	20212	(주)하*랜드	경남47나2*5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0	이사감
71	20212	이*원	93너54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9	이사감
72	20212	강*정	40수95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이사감
73	20212	김*철	01다74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7	이사감
74	20212	윤*무	62라19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신기궁*~15,	이사감
75	20212	신*익	79고938*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이사감
76	20212	홍*식	경남81무6*0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하동산*1	이사감
77	20212	김*태	86조87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7-7	이사감
78	20212	한*수	81보77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이사감
79	20212	전*상	04버11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이사감
80	20212	송*준	87조36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이사감
81	20212	(주)가*조경	경남47가4*6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중앙1*	이사감
82	20212	권*자	96루64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화심길*3	이사감
83	20212	정*상	82버35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3-8	이사감
84	20212	정*상	96무68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3-8	이사감
85	20212	정*상	89고2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3-8	이사감
86	20212	김*오	88서16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사기아*	이사감
87	20212	(*)두*중공업	97누97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23	이사감
88	20212	우*조경(주)	97나13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0,	이사감
89	20212	(주)우*랜드산업	97나1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0	이사감
90	20212	주*회사우**드산업	97나18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0	이사감
91	20212	천**농조합법인	97더65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0	이사감
92	20212	영**객자동차(주)	경남71자8*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너벵이*	이사감
93	20212	주*회사바*건설	86거7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1-2	이사감
94	20212	주*회사바*건설	97오1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1-2	이사감
95	20212	유*숙	경남70가1*1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이사감
96	20212	주*회사원*레일파크	81구689*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6-6	이사감
97	20212	공*현	경북35구5*0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11	이사감
98	20212	박*영	90로61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7	이사감
99	20212	김*곤	경남1노16*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6	이사감
100	20212	정*진	82버9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54-8	이사감
101	20212	박*희	경남47나3*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백석길*	이사감
102	20212	김*도	경남7도70*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10	이사감
103	20212	정*식	경남80무1*5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28	이사감
104	20212	이*환	경남7구86*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	이사감
105	20212	이*환	경남7노44*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	이사감
106	20212	(주)가*조경	경남81무2*1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중앙1*	이사감
107	20212	김*자	79버72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청년회*~6	이사감
108	20212	신**설주식회사	90어77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이사감
109	20212	(주)서*건설	86조86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0	이사감
110	20212	김*자	89조67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노화길*	이사감
111	20212	(주)우*랜드산업	81더71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	이사감
112	20212	왕*철	74라24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4	이사감
113	20212	노*희	76두45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4	이사감
114	20212	전*옥	경남8즈1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산복1*23	이사감
115	20212	고*준	80나67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화심안*	이사감
116	20212	고*준	83오87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화심안*	이사감
117	20212	황*운	84다79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연화길*5	이사감
118	20212	이*영	87머8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하마길*	이사감
119	20212	부*미	경남1누30*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연화길*5	이사감
120	20212	김*태	96주32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5	이사감
121	20212	주*회사우*랜드산업	97버42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4-0	이사감
122	20212	문*호	69부892*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475번*5,	이사감
123	20212	김*하	64소30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이사감
124	20212	(주)해*기업	경남71라1*7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이사감
125	20212	이*국	경남80배1*3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1	이사감
126	20212	유*숙	13조18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이사감
127	20212	최*익	경남82거1*7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향도길*	이사감
128	20212	최*두	81수84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59	이사감
129	20212	이*수	94마77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5	이사감
130	20212	김*성	92리41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7	이사감
131	20212	한**경수협회경남조경수유	97가36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7-23,	이사감
132	20212	김*식	84더88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9	이사감
133	20212	김*식	97머70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9	이사감
134	20212	원*배	부산6너37*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11,	이사감

135	20212	원*배	부산90가1*3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11,	이사감
136	20212	원*배	부산90가7*7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11,	이사감
137	20212	한*섭	96주2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7	이사감
138	20212	김*석	09너64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1	이사감
139	20212	김*석	92서607*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1	이사감
140	20212	(주)동*산업	경남8코28*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이사감
141	20212	한*섭	19러7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7	이사감
142	20212	장*문	96구3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이사감
143	20212	이*규	87다26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	이사감
144	20212	(주)동*	97나99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이사감
145	20212	(주)동*	97거2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이사감
146	20212	(주)동*	97거90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이사감
147	20212	김*복	70구73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소전방*	이사감
148	20212	오*호	61가25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74	주소불명
149	20212	정*국	39고1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6-7	주소불명
150	20212	백*성	97너4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8	주소불명
151	20212	(주)강*투어여행사	경남72바9*3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	주소불명
152	20212	김*훈	84머27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동길*	주소불명
153	20212	(주)강*투어여행사	경남72바9*4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	주소불명

하동군 공고 제2021-1533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어업폐기물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하동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1. 10. 18. ~ 2021. 11. 2.(15일간)
2. 공 고 방 법 : 하동군 홈페이지
3. 제 거 대 상 : 방치선박(폐뗏목, 폐어선)

관리번호	구분	종류	물질중량	방치장소	비고
2021- -	방치 선박	폐뗏목 폐어선 등	50톤 정도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 공유수면 일원(연막마을 앞)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어업폐기물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해당 어업폐기물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은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45)로 연락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1-1546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어업폐기물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인)

1. 공 고 기 간 : 2021. 10. 20. ~ 2021. 11. 4.(15일간)
2. 공 고 방 법 : 하동군 홈페이지
3. 제 거 대 상 : 방치선박(폐뗏목, 폐어선)


관리번호	구분	종류	물질중량	방치장소	비고
제2021-1546호	방치선박	폐뗏목 폐어선 등	20톤 정도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 공유수면 일원 (연막마을 앞) -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내도항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금남체육공원 옆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엘도라도모텔 옆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어업폐기물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해당 어업폐기물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은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45)로 연락바랍니다.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 발 권 장 소		장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바도 공유수면		
폐뗏목, 어선취원	㉡ 구분	폐뗏목, 폐어선 등	㉢ 대상	PHP
	㉣ 주요제수	하동군 금성면 바도, 배안가, 폐어선(2m ~ 5m)		
㉤ 관리장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 관리번호	해2021-1546호
㉦ 폐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 폐기 방법		즉원 폐기		
㉨ 공개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 폐뗏목, 폐어선 존경사진				
<p>귀 어업배기류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배척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와 같이 의견으로 폐기하고자 하오니 인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5)</p>				


방치 폐멧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관 장 소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바도 공유수면		
폐멧목, 어선폐선	② 구분	폐멧목, 폐어선 등	③ 폐성	나무, 스티로폼 등
	④ 주요특수	하동군 금성면 바도, 해안가, 폐면적(9m×10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3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작업 제거		
⑨ 공개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⑪ 폐멧목, 폐어선 진행사진				
<p>위 어업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지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작정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5)</p>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경 장 소		부산,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공유수면		
폐뗏목, 어선제선	② 구 분	폐뗏목, 폐어선 등	③ 폐기	나무, 스티로폼 등
	④ 주요지수	하동군 금성면 마도 해안가, 폐면적(6m×13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948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⑨ 준비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일회보상금		해당없음		
⑪ 폐뗏목, 폐어선 전경사진				
<p>위 어말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예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 권유로 제거하고자 하오나 어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철, 전화번호 : 055-890-2445)</p>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권 장 소		경남 하동군 금성면 삼사리 하도 공용수면	
폐뗏목, 어선제원	② 구분	폐뗏목, 폐어선 등	③ 제정
	④ 주요지점	하동군 금성면 하도 삼사리, 폐뗏목(4m×50m, 3m×10m)	
⑤ 관리장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44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최종 제거	
⑨ 공제장소·일 일시		해당없음	
⑩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⑪ 폐뗏목, 폐어선 중첩사진			
<p>위 어업폐기물은 공용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용수면관리 및 폐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나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월 3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김수명, 전화번호 055-680-2445)</p>			


방치 폐뗏목, 폐이선 제거공고


① 발 권 장 소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 공유수면				
폐뗏목, 이선제원	② 구분	폐뗏목, 폐이선 등	③ 재질	나무,스티로폼 등
	④ 주요처수	하동군 금성면 마도 해안가, 폐뗏목(9m×12m, 3m×10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권 제거		
⑨ 공대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일감보증금		해당없음		
⑪ 폐뗏목, 폐이선 전경사진				
<p>위 무덤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5)</p>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권 장 소		장남 하동군 남양면 내포항		
폐뗏목, 어선제원	② 구분	폐뗏목, 폐어선 등	③ 재질	나무, 스티로폼 등
	④ 주요지수	하동군 남양면 내포항, 폐뗏목(9m×12m, 9m×10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⑨ 분배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p>▲ 폐뗏목, 폐어선 현장사진</p>				
<p>위 어선폐기물은 공유수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역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같이 죄책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따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없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0일</p>				
<h2>하 동 군 수(인)</h2> <p>(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30-2445)</p>				

방치 폐옛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권 종 소		경남 하동군 고성면 죽자 1번		
배영자, 이현재원	② 구분	폐옛목, 폐어선 등	③ 계급	나무
	④ 주요지수	하동군 고성면 죽자 1번, 사이선(1m>3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⑨ 공제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⑪ 폐옛목, 폐어선 현장사진				
<p>위 처분대상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제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3)</p>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간 장 소		강남 하동군 금남면 송둔리 금남체육공원 앞		
폐뗏목, 폐어선	② 구분	폐뗏목, 폐어선 등	③ 적량	나무, 스티로폼 등
	④ 주요제수	하동군 금남면 송둔리 금남체육공원 앞, 폐뗏목(3m×3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1-15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⑨ 관리장소 및 일시		폐양업중		
⑩ 입찰보증금		폐양업중		
⑪ 폐뗏목, 폐어선 현장사진				
<p>위 어업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예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해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없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5)</p>				

방치 폐멧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발 간' 장 소		경남 하동군 근남면 노량리 787, 영도라도모형 일	
폐멧목, 어선제원	② 구분	폐멧목, 폐어선 등	③ 폐선
	④ 주요지수	하동군 근남면 노량리 영도라도모형 일, 폐양목(9m×10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해3021-1546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귀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⑨ 판매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임차보증금		해당없음	
⑪ 폐멧목, 폐어선 전경사진			
<p>위 어업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은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하고자 하오니 비리가 없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8-2445)</p>			

방치 폐뗏목, 폐어선 제거공고				
① 방 치 장 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월드컵로503번길		
폐뗏목, 폐어선	② 구분	폐뗏목, 폐어선 등	중 령	나무, 스티로폼 등
	③ 주요지수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월드컵로503번길 폐뗏목(2m × 4m)		
④ 관리용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⑤ 전화번호	☎2021-15445
⑥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⑦ 제거 방법		직접 제거		
⑧ 공제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⑨ 할당보증금		해당없음		
⑩ 폐뗏목, 폐어선 전경사진				
<p>본 '어업폐기물'은 공역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역수면권리 및 해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유 없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35-880-2445)</p>				

하동군 공고 제2021-1559호

장애인생활시설(섬진강사랑의집) 수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섬진강사랑의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하 동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 가. 시 설 명 : 섬진강사랑의 집
- 나. 시설규모 :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 다. 소 재 지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5-11
- 라. 연 면 적 : 2,248.39㎡ (본관 3층, 별관 2층, 신관 2층)
- 마. 주요시설

건축물 구분	면적(㎡)	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년도
		층	면적(㎡)	용도	
계	2,248.39				
본관	1,627.63	지상 1층	513.47	원장실, 사무실, 조리실, 식당, 물리 치료실, 자원봉사자실, 세탁실, 관리실	2005년
		지상 2층	507.13	생활실, 목욕탕, 재활상담실, 직원휴게실	
		지상 3층	496.33	생활실, 이용자휴게실, 의무실	
		지하 1층	110.7	전기실, 발전기실, 보일러실, 기계실, 창고	
별관	266.16	1층	134.64	북카페, 오투기가게, 물품보관실	2006년
		2층	131.52	격리보호실 2실, 드레스룸 2실	
신관	354.6	1층	181.8	운동치료실, 파견학급	2009년
		2층	172.8	소강당	2010년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의 범위

- 가. 섬진강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무
- 나.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다. 섬진강 사랑의 집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4. 신청자격 ※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나. 접수일 까지 법인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 가능한 법인
- 다. 접수일까지 이사회(총회)에서 섬진강사랑의 집을 수탁 운영 및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해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법인
- 마. 섬진강사랑의 집 종사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 법인

5. 신청 제외대상

-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 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법인
- 마.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 바.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 사. 기타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수탁운영조건

- 가. 종사자 고용승계 :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
- 나.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다. 위탁심사 사업 설명시 약정한 자부담금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약정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
- 라. 수탁자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
- 마. 장애인거주시설은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1. 10. 21. ~ 11. 09.(20일간, 공휴일 포함)
- 나. 접수기간 : 2021. 10. 27. ~ 11. 09.(10일간)
 -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다. 접수장소 : 하동군 주민행복과 (☎055-880-2212, 2215)
-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등 불가)

9. 심사일정 및 방법

- 가. 심사일시 : 2021. 11. 17.(수) 14:00
- 나. 심사장소 : 하동군청 소회의실(2층)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다. 심사내용 : 서류 및 사업내용 심사
- 라. 심사항목 : 수탁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장 예정자 사업수행능력, 운영에 대한 의지 및 준비
- 마. 사업설명 : 발표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바. 발 표 자 : 법인 임직원 또는 시설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 ※ 불참 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서

10. 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선정기준 :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 1)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상대상 1순위이며, 결정통지를 무효화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
 - 2)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3) 1차 때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2차 공고하고, 2차 때에도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적격여부(평균 70점이상)를 판단 수탁자 선정
-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 “0” 점 처리

다. 결과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11. 위·수탁협약 체결

가. 시 기 : 수탁법인 선정결과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장 소 : 하동군 주민행복과

다. 공 증 : 법무법인에 의뢰, 위·수탁협약서 공증절차 이행

12. 제출서류

가. 수탁 신청서 - [붙임 1]

나. 각서 - [붙임 2]

다.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붙임 3]

라. 위탁심의자료 - [붙임 4]

마. 사업운영계획서 - [붙임 5]

바. 증빙서류 - [붙임 6]

- 1) 제출서류는 가~바 항 순서에 따라 A4 좌철 편철하여 13부(원본 1, 사본 12) 책자로 제출(신청서 접수시 제출), 제본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하단에 페이지 표기
- 2) 사업설명 발표 요약자료(10분 내외)는 A4 좌철 제본하여 13부 제출하고 별도로 전산파일 제출(USB 또는 이메일)하여야 함
- 발표일 3일전까지 제출
- 3)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예금통장 잔고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

13. 기타사항

- 가.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 체결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 라.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수탁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름)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부서(☎ 055-880-2212, 221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의 해석은 하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신청서 제 출 서 류

- 1. 수탁 신청서 ----- ○○
- 2. 법인 일반현황 ----- ○○
- 3. 사업 운영계획서----- ○○
- 4.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
- 5. 위탁심사자료 ----- ○○
- 6. 각 서 ----- ○○
- 7. 위탁심사자료 증빙서류 ----- ○○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관련자료 추가 제출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수탁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예산운영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
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신청 구비서류는 제본(A4용지)하여 13권으로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 작성 13부 별도 제출
- 제본시 반드시 세부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 쪽수 표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연장) 신청서

법 인 현 황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천원, 동산 :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 신청동기 (취지)					
특이사항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사본 각 1부 2.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3. 법인 보유자산 및 부채상황 증빙자료 4. 법인의 장애인복지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장 관련서류 -이력서 및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장애인업무 경력증명서 6. 최근 3년이내 행정기관, 법인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등 기타 필요한 서류 7. 수탁시설 사업운영 계획 					

【붙임 2】

각 서

- 법 인 명 :
- 법 인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
- 생 년 월 일 :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하동군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 3】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은(는) 섬진강사랑의 집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하 동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당초 약정한 법인전입금 약정액을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시설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부담액 외에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부 담 액	지원시기	비 고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 첨부: 1.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증빙서류: page)
 2. 법인대표 인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page)

○○○○법인 일반현황

□ 기본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유형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input type="radio"/> 근거 <input type="radio"/> 목적사업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법인시설	<input type="radio"/> 직영시설 : 개소 - 시설명 : <input type="radio"/> 수탁시설 : 개소 - 시설명 :			

※ 모든 첨부서류는 각 항에 페이지 기재할 것

【붙임 4】

I 수탁자의 적격성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가. 법인 유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

다. 이사회 의결 내용(사회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내용)

일자	장소	참석인원	의결내용

증빙서류	page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이사회 의결서 사본
------	------	-----------------------------------

2. 법인의 재산현황 (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명의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	순 자 산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사회 구성

가. 법인임원 현황 :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 업	주요경력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증빙서류	page	① 임원 이력서 및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② 자격 및 학위 전문 증빙(해당이상의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료증,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	---

나.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자	참석인원	회의안건	회의결과	사 업 반영여부	이 사 참석율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 분		이사 명 감사 명				%

증빙서류	page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회의록 기명날인 확인 요망) 법인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이사회 회의 결과를 사업 반영정도 확인
-------------	-------------	--

4-1.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이용인원 (정원/현원)	종사자수	비 고 (이용대상)

4-2.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운영기간	이용인원 (정원/현원)	종사자수	비 고 (이용대상)

4-3.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구 분	명 칭	신청기관	사업내용	사업기간	수탁실적 (천원)

증빙서류	page	공모사업 수탁실적 증빙자료
-------------	-------------	----------------

4-4. 법인의 후원금 모금 실적(최근 3년간)

년 도	모 금 액	사 용 처			
		계	종 사 자 복 리 후 생	시 설 이 용 자 복 지 후 생	기 타
계					

증빙서류	page	후원금 모금실적 증빙자료
-------------	-------------	---------------

II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분야 자율적으로 기술

1-2 법인의 운영의지

※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열의도 및 하동군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도록 기술
※ 법인대표 또는 원장 내정자의 수탁시설 운영의지 관련 소견서 첨부

2. 시설장의 전문성

가.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

1) 시설장(내정자)의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본적)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채용 여부

증빙서류 page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2) 시설장(내정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기재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등급	시행기관

증빙서류 page 소지 자격증 사본

나.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 자격요건(사회복지사 자격 등급) 및 공개모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채용계획 작성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증빙서류 page 불임5)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4.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증빙서류	page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첨부
------	------	---------------

5.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작성(안)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가. 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
 - 조직 및 인력구성의 방향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나. 종사자 채용 및 전문인력 확보
 - 직원확보계획
- 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
- 라.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운용
 - 내부 슈퍼비전 체계
 - 외부 슈퍼비전 체계
- 마. 종사자 복리향상 방안
- 바. 업무 환경 개선 방안
 - 개선목표
 - 실행방안 및 수행체계

6.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용예정 여부

법인명	시설명	시스템 사 용	시스템 사용예정



재정능력

1. 최근 법인 재무제표

증빙서류	page	법인의 재무제표서(결산서, 예산서 등) 제출 - 부채, 차입현황, 법인전입금 내역 포함
------	------	---

2.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가. 법인의 재정 안전성

1)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C)	자 산			부 채(C)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천원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증빙서류	page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증빙서류 page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증빙서류	page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천원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증빙서류	page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임대계약서 사본 등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증빙서류	page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증빙서류	page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 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다) 보통재산 : 천원

종 목	주 요 내 용	금액(천원)

나. 법인의 재정확충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가. 법인의 예산관리

연도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이행현황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예산 총계주의	예산 편성 및 결정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장부 인정)
	세입세출 출납사무 다음연도 2월말 완결	법인회계, 법인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분리	법인 보유재산의 명의 (차량, 통장 등)	세입·세출 예산 계상여부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보고 (개시 5일 前)	
2019							
2020							
2021							

나. 법인의 예산규모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기본재산 수 입	수익사업 수 입	보 조 금 입 수	후 원 금 입 수	차입금	전입금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접수입)
계								
2019								
2020								
2021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21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2)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계							
2019							
2020							
2021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21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증빙서류	page	법인회계 예·결산서(2018년~21년)
-------------	-------------	-----------------------

다. 법인의 회계집행 적절성(2019 ~ 2021년 공고일 전일 기준)

1) 법인 대상 회계감사 운영 실태

일 자	구 분	방 법	감 사 자(직함)	지적내용	처분결과	이행사항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법인 외부 회계감사 등을 기재

증빙서류	page	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	-------------	-----------------

2)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감사(지도·감독)

년 도	일 시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결과	이행사항
2019					
2020					
2021					

IV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4. 지역사회 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가.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소재지	규모(m ²)	운영형태	상근직원명단 (담당업무)	허가사항	비고
	m ² (지하 /지상)				해당없음 (별도설치)

증빙서류	page	법인 주된 사무소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	-------------------------------------

나.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1) 법인 조직도
- 2) 직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특수관계 여부

증빙서류	page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

【붙임 5】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 사랑의 집 사업운영계획서

※ 목차 및 페이지 작성

○○○법인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 심진강 사랑의 집 향후 운영계획

1. 향후 운영 계획서

- 가. 향후 시설 운영의 비전
- 나. 향후 지역사회내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방안
- 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라. 지역의 당면문제 및 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마. 향후 3개년 중점 추진사항
- 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사.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2. 향후 세부 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 각종 예산의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이용자의 편의증진 방안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3. 운영에 따른 예산 계획서

-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 부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3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 부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 부담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5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 부담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 부담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4. 섬진강 사랑의 집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계획 : (고용승계 직원 포함 확보계획/자격증 내역)

계	시 설 장	사무국장	1~3급	4~5급	기능·고용직
/	/	/	/	/	/

※ 직원 고용승계 등 업무협의

5. 섬진강 사랑의 집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

- 가. 연간운영비 예상액 : 천원
- 나. 운영비 자체 부담계획

(단위 : 천원)

계	보 조 금	자 체 부 담 내 역			비 고
		소 계	법인전입금	후 원 금	

※ 보조금 : 국비 및 지방비 포함.

6. 시설장 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자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등록기준지)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가. 근무경력

구 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 락 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장애인복지시설	계		년 월		
	소 계				
사회복지시설	계				
	소 계				
노인복지시설	계				
	소 계				
아동복지시설	계				
	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계				
	소 계				
기타복지시설	계				
	소 계				

나. 자격취득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고

【붙임 6】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신청서 위탁심사자료 증빙서류

-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증빙 ----- ○○
- 2. 법인임원현황 증빙 ----- ○○
- 3.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 ○○
- 4.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 ○○
- 5. 법인의 후원금 모금실적(최근 3년간) ----- ○○
- 6. 시설장의 인적사항 ----- ○○
- 7. 시설장의 자격증 취득현황 ----- ○○
- 8.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
- 9.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 ○○
- 10. 최근 법인 재무제표 ----- ○○
- 1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12. 수익용 기본재산 ----- ○○
- 13. 부채현황 ----- ○○
- 14. 법인의 예산규모 ----- ○○
- 15. 법인대상 회계감사 운영실태 ----- ○○
- 16.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 ○○
- 17. 법인 직원 현황 ----- ○○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운영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하동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주민행복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및 이용 목적

가) 제공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목적

-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 생활 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예정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2.7.27>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 사랑의 집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예정자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